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11. 20 선고 2023가단104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동현, 박태진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호성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영노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20.

주 문

1.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D과 피고 C 사이에 2022. 4. 25. 체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D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 4. 26. 접수 제82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D과 피고 C 사이에 2023. 2.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D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2. 24. 접수 제40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각 이행하라.

2. D과 피고 C 사이에 2022. 3. 24.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85,441,2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85,441,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피고 C이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2. 6.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9,281,04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9,281,0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D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9,281,04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D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AR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24. 6. 17.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 B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지급청구권 9,281,044원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라고 한다) 관련 청구1)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D과 피고 C 사이에 2022. 4. 25. 체결된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설정계약을 57,3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57,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1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4, 5, 6부동산’이라고 한다) 관련 청구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제3 내지 6부동산에 관하여, D과 피고 C 사이에 2022. 3.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D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 3. 29. 접수 제59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

주문 제2항 및 이 사건 제3, 4, 6부동산에 관하여, D과 피고 C 사이에 2022. 3.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85,441,2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관계

원고는 철근재 가공, 유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D은 (주)E, (주)F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주)F이 시공하는 사업장에 철근 등을 공급하였고, D은 2021. 3. 7.경 원고에게 (주)F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처분행위

D은 2022. 6. 7.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이 사건 제2부동산 처분행위

1) D은 2022. 4. 25.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 가등기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D은 2023. 2. 15. 피고 C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3. 2. 24. 피고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D의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 처분행위

D은 2022. 3. 24. 피고 C과 이 사건 제3 내지 6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 4, 5, 6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 3. 29. 피고 C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 제8호증의 1, 갑 제13 내지 18, 제21호증, 을다 제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은 2021. 3. 7. 원고에게 (주)F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361,166,3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361,166,3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2021. 5. 30.까지 변제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잔액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② 원고는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7511호로 물품대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D은 원고에게 256,624,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③ D이 피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날짜	피보전채권액
2022. 03. 24.	196,781,771원
2022. 04. 25.	200,232,191원 (196,781,771원 × 32/365일 × 연 20%)
2022. 06. 07.	204,868,693원 (196,781,771원 × 75/365일 × 연 20%)
2023. 02. 15.	232,148,576원 (196,781,771원 × 328/365일 × 연 2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연대보증금 196,781,7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제1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제2부동산 가등기설정계약, 이 사건 제2 내지 6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고 한다)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D의 무자력

가. 이 사건 제1부동산 관련

별지2 '2022. 6. 7. D의 재산상태'의 증거란 기재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이 사건 제1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인 2022. 6. 7.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2부동산 관련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부동산 가등기설정계약이 2022. 4. 25. 체결된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계약이 2023. 2. 15.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2, 갑 제14호증, 갑 제21호증의 1,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위가 이 사건 제2부동산 가등기설정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순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위 2022. 4. 25.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별지3 '2022. 4. 25. D의 재산상태'의 증거란 기재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22. 4. 25.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 관련

별지4 '2022. 3. 24. D의 재산상태'의 증거란 기재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22. 3. 24.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D에게 다른 책임재산이 있기 때문에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8호증, 을다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해행위 성립 및 피고들의 악의 추정

가. 이 사건 제1부동산 관련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공동담보, 즉 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그 법률행위 이전보다 부족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1, 갑 제13호증,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G는 2021. 8. 27.경 D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 G는 2021. 8. 27.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로받은 사실, ③ 피고 G는 2022. 6. 8. H(당초 공동피고였으나, 원고가 H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로부터 위 200,000,000원 중 140,000,000원을 변제받았고, 같은 날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었으며, 그 하루 전인 2022. 6. 7. 미변제금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받은 사실, ④ H는 2022. 6. 7.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로받았고, 그 다음날인 2022. 6. 8. 위 ③항과 같이 피고 G에게 14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기존에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말소한 후 그 피담보채권액 중 미변제금에 한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D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5부동산 관련 사해행위 성립 및 피고 C의 악의 추정

1) 사해행위 성립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제2부동산 가등기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이 사건 제5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는바, 위 각 법률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가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각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당시 담보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건 제2, 5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가등기를 설정받은 것이라면서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등 참조). 이때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다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은 D 소유의 별지1 목록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I 소유인 부동산(건물 2개, 토지 5개)도 함께 매수한 점, ② 부동산의 규모(필지도 여러 개이고, 건물도 포함됨), 부동산의 가액(수 십억 원에 이르는 점)이 상당함에도 계약일과 등기일이 같은 날짜이거나 며칠 차이가 나지 않는 점, ③ D의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④ D, I, J, 피고 K은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제3, 4, 6부동산 관련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3, 4, 6부동산 각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제3, 4, 6부동산에 4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각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피담보채권액의 합계액이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의 2024. 5. 15.자 준비서면 제12쪽 표 참조), 이 사건 제3, 4, 6부동산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가. 이 사건 제2부동산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그러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이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아래 공동담보목록 중 증거란 기재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이 사건 제2부동산 가등기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22. 3. 29.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② 위 근저당권은 D 소유인 이 사건 제2부동산 및 피고 C 소유인 아래 공동담보목록 순번 제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사실, ③ 같은 제1 내지 11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총 1,750,600,000원으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공동담보목록				
순번	부동산 표시	소유자	부동산 가액	증거
1	전라북도 남원시 M	C	190,500,000원	갑21-2, 을다2
2	전라북도 남원시 N	C	277,700,000원	갑21-3, 을다2
3	전라북도 남원시 O	C	94,600,000원	갑21-4, 을다2
4	전라북도 남원시 M외 2필지 주 1동	C	196,600,000원	갑21-5, 을다2
5	전라북도 남원시 M외 2필지 주 2동	C	240,000,000원	갑21-6, 을다2
6	전라북도 남원시 P	C	120,500,000원	갑21-7, 을다2
7	전라북도 남원시 Q	C	30,700,000원	갑21-8, 을다2
8	전라북도 남원시 R	C	77,100,000원	갑16, 을다3
9	전라북도 남원시 S	C	181,150,000원	갑15, 을다3
10	전라북도 남원시 T	C	149,150,000원	갑18, 을다3
11	전라북도 남원시 U	C	192,600,000원	갑17, 을다3
주채무자 C 소유 부동산 가액 합계			1,750,600,000원	
12	전라북도 남원시 V	D	57,350,000원	갑21-1, 을다4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이 부담하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0원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제2부동산 가등기설정계약 및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2부동산 가등기설정계약 및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D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 가등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5부동산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에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① D과 피고 C이 2022. 3. 24. 이 사건 제5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제4부동산의 가액은 77,100,000원이고, 이 사건 제5부동산의 가액은 192,6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4, 5, 갑 제8호증의 1, 갑 제16, 17호증, 을다 제3호증, 을다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③ D은 2021. 10. 1. (주)W에 이 사건 제4, 5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④ 피고 C이 이 사건 제5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2022. 3. 29. (주)W에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5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이후에 선행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 사건 제5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07,119,021원[= 실제 피담보채권액 150,000,000원 × 이 사건 제5부동산 가액 192,600,000원 / (이 사건 제5부동산 가액 192,600,000원 + 이 사건 제4부동산 가액 77,100,000원)]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85,480,979원(= 이 사건 제5부동산 가액 192,600,000원 - 피담보채권액은 107,119,021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5,441,247원¹⁾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가액배상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영

별지

1) 원고는 이 사건 제4부동산의 가액을 77,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차이가 발생하였다.